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경영, 김제리,
김종무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
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.
- 본 조례의 별지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(제1호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.
-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·도의 경우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음.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. (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
[별지 제1호 서식]		[별지 제1호 서식]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제 호</td> <td>처리 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교육위탁 지정 신청서</td> <td>30일</td> </tr> </table>		제 호		처리 기간	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30일	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제 호</td> <td>----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교육위탁 지정 신청서</td> <td>----</td> </tr> </table>		제 호		----	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----
제 호		처리 기간													
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30일													
제 호		----													
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----													
신청자	① 성명 (대표자)	②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
	③ 업소명 (단체, 법인)														
	④ 주소														
⑤ 영업장 소재지	⑥ 전화번호														
이하 생략		이하 생략													